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73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최혁진 · 정혜경 · 허성무  
박상혁 · 서미화 · 박민규  
김준형 · 김종민 · 이성운  
김준혁 · 이수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심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가족사, 외모 등에 관한 질의가 반복되고, 모욕적 발언이나 정치적 공격성 언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검증 목적에서 벗어나 정쟁과 공개 망신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공직후보자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질의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도록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고,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나 인격 침해성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이 주의·경고, 질의 중단,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마련했음.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품격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업무 관련성 원칙) ① 위원의 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② 위원장은 질의가 직무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종교, 학연,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위반되는 질의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질의 중단을 명하고,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비윤리적 청문 질의에 대한 제재) ① 위원장은 제18조제3항에 위반된 질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반 질의 또는 발언이 반복되거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또는 질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7조의2(업무 관련성 원칙) ①  <u>위원의 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u></p> <p>② <u>위원장은 질의가 직무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u></p>
<p>제18조(주의의무) ① · 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8조(주의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종교, 학연,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④ <u>위원장은 제3항에 위반되는 질의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질의 중단을 명하고,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④ <u>위원장은 제3항에 위반되는 질의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질의 중단을 명하고,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제18조의2(비윤리적 청문 질의에</p>

대한 제재) ① 위원장은 제18조제3항에 위반된 질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반 질의 또는 발언이 반복되거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또는 질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